

●법무부령 제1072호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(를)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4년 02월 08일

법무부장관 인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유통기한” 을 “소비기한” 으로, “하여야” 를 “해야” 로 한다.

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3분” 을 “5분” 으로 한다.

다만, 미결수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허가할 경우 그 허용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.

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전화통화 녹음기록물” 을 “제1항의 녹음기록물” 로, “영 제62조제4항” 을 “영 제62조제4항 및 제5항” 으로 한다.

③ 소장은 제1항의 녹음기록물에 대한 보호·관리를 위해 전화통화정보 취급자를 지정해야 하고, 전화통화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화통화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제29조의2를 제29조의3으로 하고,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2(세부사항)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화통화의 허가범위, 통화내용의 청취·녹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.

제29조의3(중전의 제29조의2)의 제목 “(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 등 신청)” 을 “(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접견 등 신청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영 제59조의2제3항에” 를 “영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변호사가 같은 조 제3항에” 로, “제출하여야” 를 “제출해야” 로 한다.

① 영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영 제59조의2제1항제1호의 변호사는 소송위임장 사본 등 소송사건의 대리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.

제59조의4부터 제59조의6까지를 각각 제59조의5부터 제59조의7까지로 하고, 제5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9조의4(의류) 법무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소년수용자의 나이·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류의 품목과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59조의7(중전의 제59조의6) 중 “주·부식의” 를 “주·부식” 으로 한다.

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본문 중 “제260조에 따른 가석방” 을 “가석방” 으로 한다.

③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「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」 제33조제2항에 따른 형집행정지의 취소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(제74조의 경비처우급에

만 해당한다)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78조제4항 중 “관구”를 “수용관리팀”으로, “구역”을 “구역을 관리하는 단위조직”으로, “책임교도관”을 “팀장”으로 한다.

제8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봉사원 선정, 기간연장 및 선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.

제90조제1항제1호 중 “5회”를 “20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3회”를 “10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4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일반경비처우급·중(重)경비처우급”을 “중(重)경비처우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완화경비처우급”을 “완화경비처우급·일반경비처우급”으로 한다.

3. 일반경비처우급: 월 5회 이내

제93조제1항제1호 중 “3년”을 “2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2회”를 “3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1년 6개월 이하”를 “2년 6개월 미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9개월 미만인 수형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수형자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범죄 횟수가 1회인 사람

2.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사람

제9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, 교정시설 또는 지역사회에 설치하는 개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.

제3편제1장제3절의 제목 “분류처우위원회”를 “분류전담시설 및 분류처우위원회”로 한다.

제3편제1장제3절에 제96조의2 및 제10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6조의2(분류전담시설) ① 법 제61조 및 영 제86조에 따른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(이하 이 절에서 “분류전담시설”이라 한다)의 장은 범죄의 피해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(이하 이 절에서 “고위험군 수형자”라 한다)의 개별처우계획을 수립·조정하기 위해 고위험군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면밀히 분석·평가하기 위한 분류심사(이하 이 절에서 “정밀분류심사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분류전담시설의 장은 정밀분류심사를 실시한 고위험군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.

제100조의2(분류전담시설에 두는 위원회)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분류전담시설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 대상 및 개최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3편제2장제2절에 제1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9조의2(전문인력) ① 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의 요건,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.

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” 를 “협의회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고용지원센터” 를 “고용센터” 로 한다.

제1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수용관리 또는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집행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.

제15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사형확정자와 소년수용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.

제162조제2항 중 “중앙통제실·관구실 그 밖에” 를 “중앙통제실, 수용관리팀의 사무실, 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175조제1호 중 “금속보호대는 수갑과 수갑보호기를 보호대에 연결하여” 를 “금속보호대의 사용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벨트보호대는 보호대에 부착된 고리에 수갑을 연결하여” 를 “벨트 보호대의 사용은” 으로 한다.

제179조제2항제1호 중 “일반포승으로” 를 “일반포승 또는 별표 20에 따른 포승연결줄로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“연승줄” 을 각각 “포승연결줄” 로 한다.

제181조 본문 중 “기록하여야” 를 “기록해야” 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중경비시설 안에서 수용자의 동행계호를 위하여” 를 “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214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공연히 다른 사람을 해할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

제215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제17호” 를 “제18호” 로 한다.

제2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두 가지 이상의 금치는 연속하여 집행할 수 없다. 다만, 두 가지 이상의 금치 기간의 합이 45일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제245조제2항 중 “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사항에 관한” 을 “수형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하거나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” 로 한다.

제24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“편지의 수신·발신” 을 “전화통화” 로 한다.

이 경우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0조를 준용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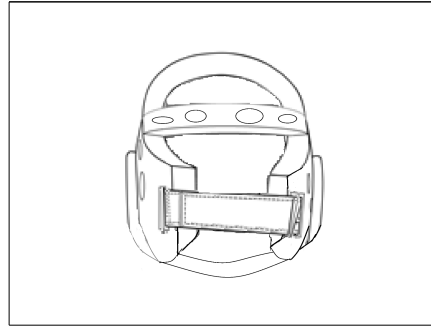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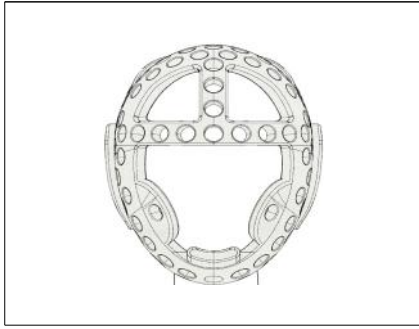
제2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5조의2(심층면접)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층면접(수형자 면담·심리검사, 수형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, 사회복귀 준비 상태 등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심층면접의 방법,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.

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머리보호장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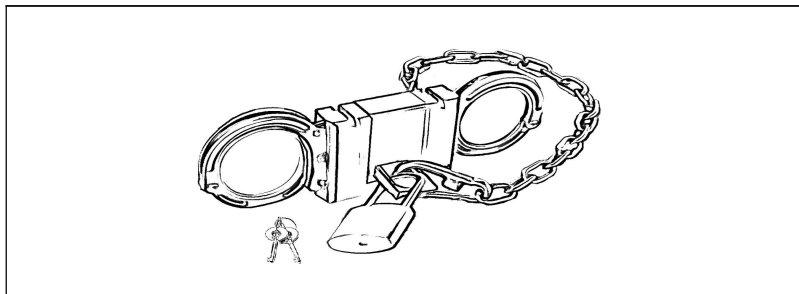


재 질	형 태	규 격	색 상	구 성
폴리 우레탄	헬멧	· 머리둘레: 55cm ~ 65cm · 두께: 1.5cm	· 대: 흑색 · 중: 황색 · 소: 청색	· 후두부 중앙 고정장치 (1개 조임밴드) · 지름 3cm 미만의 환기구멍

별표 5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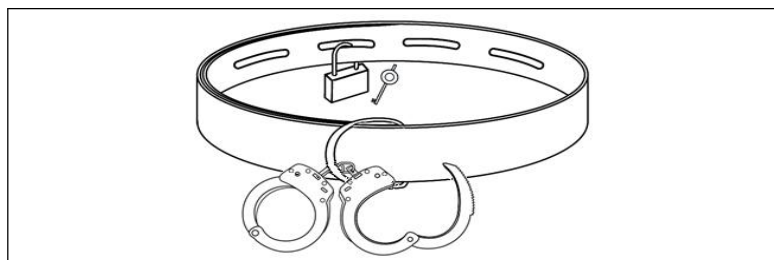
4. 보호대

가. 금속보호대



재 질	규 격	구 성
· 고리: 스테인리스스틸 · 수갑: 양손수갑 재질과 동일 · 수갑보호기: 폴리카보네이트 및 알루미늄합금	길이 180cm 미만의 고리 규격	· 수갑연결용 고리 · 안전 자물쇠 · 양손수갑 · 수갑보호기

나. 벨트보호대



재 질	형 태	규 격	구 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벨트: 폴리프로필렌 · 링: 스테인리스스틸 · 수갑: 양손수갑 재질과 동일 	벨크로 접착 띠	140cm×5cm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벨크로접착 띠가 부착된 중앙 분리형 벨트 · D형 고리 · 안전 자물쇠 · 양손수갑

별표 9 및 별표 2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소득점수 채점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소득점수 채 점 자	보안 담당 교도관								
	작업·교육 담당 교도관								
	수용관리팀장								

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화통화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 이후의 전화통화를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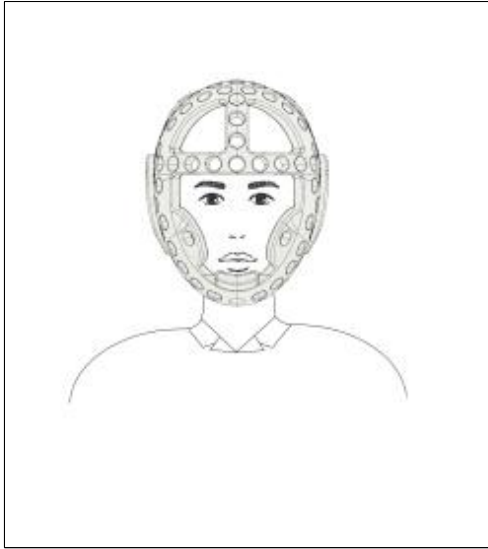
제3조(재수용 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에 관한 적용례)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수용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처우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4조(규율 및 징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214조 및 제2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연히 다른 사람을 해할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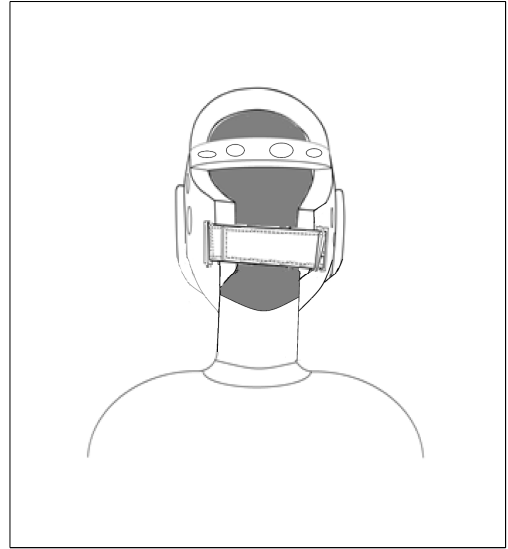
제5조(금치의 연속 집행에 관한 적용례) 제2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집행 중인 금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[별표 9]

머리보호장비 사용방법 (제173조 관련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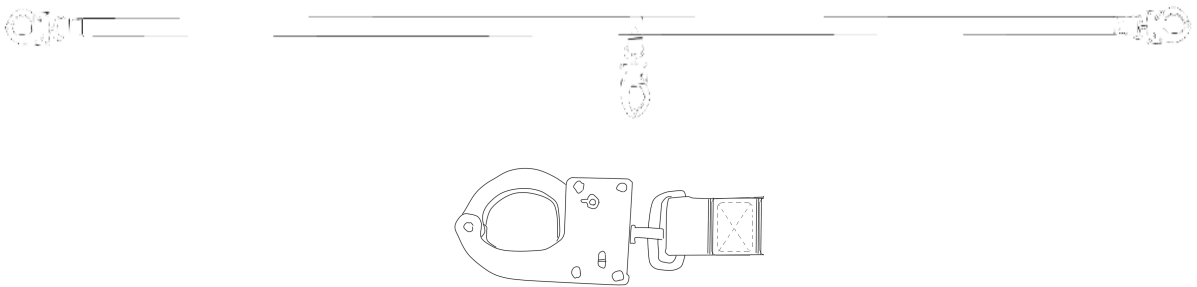
(앞면)



(뒷면)

[별표 20]

포승연결줄 (제179조제2항제1호 관련)



형 태	재 질	규 격	구 성
나일론 줄 양쪽 끝과 가운데에 열쇠를 사용한 잠금 기능이 있는 금속 고리를 연결하여 최대 3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줄: 나일론• 금속 고리: 두랄루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길이: 3m• 폭: 2cm• 두께: 2.5mm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줄: 1• 금속 고리: 3

변호사 접견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-	------	----

신청인	성명
	소속
	전화번호

사건 종류	<input type="checkbox"/> 소송사건 <input type="checkbox"/> 상소권회복 청구사건 <input type="checkbox"/> 재심 청구사건 ※ 해당되는 사건에 √ 표시를 합니다.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에 √ 표시를 하되,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소송사건에 √ 표시를 합니다.
-------	---

수용자 성명	수용번호	접견일시

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·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용자 접견신청을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교도소(구치소)장 귀하

첨부자료	소송위임장 사본 등 소송사건의 대리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(신청인이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------	---

변호사 []접견시간연장 신청서
[]접견횟수추가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시간연장: 즉시 횟수추가: 2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신청인	성명
	소속
	전화번호

수용자 성명	수용번호	접견일시

신청사유	
------	--

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접견시간의 연장/접견횟수의 추가 신청을 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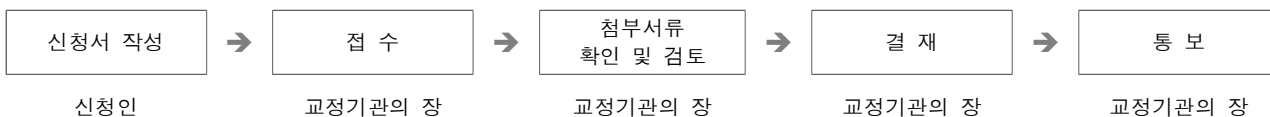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교도소(구치소)장 귀하

첨부자료	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
------	----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(헌법재판소 2021. 10. 28. 선고, 2018헌마60 결정)의 취지를 반영하여, 변호사 접견신청서의 첨부자료 중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외하는 한편, 법무부장관은 소년수용자의 나이·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류의 품목과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, 분류전담시설의 장은 고위험군 수형자의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·조정하기 위하여 정밀분류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, 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